

의안번호	제 36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3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충청북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도입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운영을 위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, 선정대리인의 임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(안 제12조 신설)
-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신설)
-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 신설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13조(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)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(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)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대리인”으로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-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 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(解囑)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말은 사건에 대해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그 이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이의신청등”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-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·신청일, 청구·신청인, 대리인 지정일,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가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·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3조(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)</p> <p>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(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대리인”으로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

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
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
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
은 규칙으로 정하는 충청북도
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
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
로 한다. 다만, 선정대리인이 성
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
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
그 밖에 해촉(解囑)할 만한 사
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
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
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말은 사
건에 대해 다른 선정대리인을
지정하여 과세전적부심심사 청
구 또는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
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

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종료된
선정 대리인에게 그 이전에 지
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
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⑦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
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
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
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
는 안 된다.

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
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
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
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
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
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
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4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
등)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
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
청(이하 “이의신청등”이라 한
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
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
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
이의신청인(이하 “이의신청인
등”이라 한다)에게 선정 대리인

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·신청일, 청구·신청인, 대리인 지정일,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가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·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기본법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“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이의신청인등의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 2.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
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
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
 5.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,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“이라 한다)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2.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종합소득금액의 경우: 5천만원(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,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.

2.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(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)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. 다만,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가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

나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

다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

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 등“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.

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“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.

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, 대리인의 임기·위촉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방세 불복청구의 무료대리를 위한 ‘충청북도 선정 대리인’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선정 대리인 지정시 대리인에게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13조(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)
 -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방세 불복청구한 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재산(부동산, 차량, 회원권)*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자의 선정대리인 지정 예상건수(3년)임
 - * 현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으로만 추계한 인원임
- 매년 선정대리인 지정건수 2건씩 증가함을 감안

<3년간 불복청구 현황 및 선정대리인 지정 예상 내역>

(단위 : 건)

구 분	불복청구 현황				선정대리인 지정 예상 건				평균 지정 예상 건 (B=A/3)	비 고
	계	'17	'18	'19	계(A)	'17	'18	'19		
선정대리인	85	22	32	31	22	5	10	7	8	

- 산출내역

- 8건 * 100,000원 = 800,000원

나. 추계 결과 : 6,000천원

- 선정대리인 3명을 위촉하여 연간 8건의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시 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2020년도 800천원, 2021년 1,000천원, 2022년 1,200천원, 2023년 1,400천원, 2024년 1,6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

* 유사업무 수행 대리인 수당

(국세 국선대리인 수당) 대전지방국세청 150천원, 청주세무서 100천원

(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)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3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10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선정대리인 수당	6,000	800	1,000	1,200	1,400	1,600

6. 작성자 : 세정담당관 행정6급 서선홍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도)	2차년도 (2021년도)	3차년도 (2022년도)	4차년도 (2023년도)	5차년도 (2024년도)	계
세 입						
세 출	800	1,000	1,200	1,400	1,600	6,000
선정대리인 수당	800	1,000	1,200	1,400	1,600	6,000
재원조달	800	1,000	1,200	1,400	1,600	6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800	1,000	1,200	1,400	6,000
	지방세	800	1,000	1,200	1,400	6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					
기 타 (민간 자부담)						